

<b>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b>	소관부서	컴플라이언스파트
	시행일	2019. 11. 01.
	문서번호	CGV 컴플-CL-04-20191101

2019년 11월 01일 제정



# 활용 가이드

## I. 목적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위반 여부
2. 물품 등 거래 계약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 II. 활용 방법

1.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내용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2.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련 업무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III. 점검 요령

1.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 '○'로 체크한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X'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시거나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 '△'로 체크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2.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기타 체크리스트 내용,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컴플라이언스파트(cgv.cp@cj.net)로 문의 바랍니다.

## 목차

I.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3
1. 의의-----	3
2. 주요 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	3
3. 제재사항-----	5
II. 물품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	6
III. 체크리스트-----	7
1. 계약 체결 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7

# 1.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 1. 의의

- (1)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①구입강제, ②이익제공강요, ③판매목표강제, ④불이익제공, ⑤경영간섭 행위들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
- (2) CJ CGV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모든 거래행위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 2. 주요 행위 유형별 설명 및 예시

### (1) 구입강제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구입강제 행위 예시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2) 이익제공강요

“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이익제공강요 행위 예시

-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3) 판매목표강제

“판매목표강제”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판매목표강제 행위 예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4) 불이익제공

“불이익제공”이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 (5) 경영간섭

“경영간섭”이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경영간섭 행위 예시

-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3. 제재사항

- (1)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 (2) 자세한 사항은 CP편람 p.52~53 참조.

## II. 물품 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

협력업체와 물품 등 거래계약을 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물품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에 거래 내용, 대금,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물품 등 검사 방법 등 계약 중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품 등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납품대금은 지급기일까지 꼭 지급합니다.
4.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6.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 사유 등을 문서로 빠르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거래 상대방이 조정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물품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계약서, 품질관리 관련 서류, 불합격 사유 통보 관련 서류, 분쟁 해결 관련 서류 등)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합니다.

### Ⅲ. 체크리스트

#### 1. 계약 체결 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NO	점검사항	O	X	△
계약체결 전 당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1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2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3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4	위 1. ~ 3.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5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물품 등 거래계약 시 준수사항 10 가지를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6	물품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에 거래 내용, 대금,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물품 등 검사 방법 등 계약 중요 내용을 꼭 기재한다.			
7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납품대금은 지급기일까지 꼭 지급한다.			
9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11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 사유 등을 문서로 빠르게 통지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4	거래 상대방이 조정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물품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계약서, 품질관리 관련 서류, 불합격 사유 통보 관련 서류, 분쟁 해결 관련 서류 등)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 년 간 보관한다.			